

「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31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,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(안 제4조)
  -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및 역사계승사업, 사료의 보관·관리 사업 등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3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민주화운동”이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념사업)**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
2.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
3.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·관리 사업
4.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
5.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·출판·학술 및 문화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예산지원)** 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시장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·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 등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강릉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